공정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

2026년 11월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 개요

[시행 2027. 9. 9.] [법률 제21904호, 2026. 9. 8., 일부개정]

1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 도입 및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확대

○ 소송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 곤란**한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공정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다만, **영업비밀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법원에 제출 의무화** 함과 동시에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두어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와 소송 당사자의 **영업비밀 보호 간 균형** 도모

○ 또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의 **대상**을 기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에서 **위반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로 확대

2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에 대해서 **신고인이 공정위에 재조사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

3 향후계획

○ 개정안은 공포일('26.9.8.)로부터 1년 후 시행('27.9.9.) 예정

1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및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확대

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필요에 따라 **공정위**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간에는 공정위가 법원의 요구에 응할 **명시적인 의무**가 **없었고**,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위가 보유한 사건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소송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공정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자료, ▲공정위 작성 자료(단,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 ▲타법상 비공개 자료, ▲영업비밀 자료 등 **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자료를 사건처리가 완료된 후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법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의무 조항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영업비밀 자료**가 손해의 입증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열람 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나 열람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두어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와 소송 당사자의 **영업비밀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제도***도 **개선**하였다.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의 **대상**을 기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에서 '**위반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범위**를 기존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반**'으로 확대하였다.

2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예: 무혐의)에 대해서 **신고인이 공정위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법제화**된다.

그간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이하 '사건절차규칙')상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를 통해서 재신고 사건에 대한 재조사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재심위의 설치근거가 행정규칙에 있어 국민들이 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신고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화하며, ▲ **'신고인 재조사요청 심사위원회'** 에서 신고인의 **재조사요청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3 향후계획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27.9.9.)**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법) ▲자료제출명령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신고인의 재조사 요청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

붙임 **공정거래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의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인 재조사 요청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사위원회가 신고인의 재조사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 신고를 조사하거나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에게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재조사 요청의 대상·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①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그 자료의 제출을----------.
<신 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2. 조사·심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해당 사건의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4. 영업비밀 자료
<신 설>	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당사자의 자료제출) 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2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	제112조(비밀유지명령) ① -------그 당사자 또는 공

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거래위원회(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보유한 영업비밀----------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1. ----------제110조·제111조----------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2.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 다만, 제11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